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 약정서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을"이라 한다)은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을"의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의 업무내용)

본 계약에 의해 처리되는 가상계좌의 사용 용도 및 목적,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상계좌의 사용용도

-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단독 이용
(Virtual Account Service Only)
- 매출 채권 관리시스템 (RMS-Receivables Management System) 서비스와 연계된 가상 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 SMS 서비스 (추가 서비스)

2. 가상계좌 사용 목적: ()

3. 업무의 범위

- ① 계좌 개설 서비스: "을"이 "갑"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사용할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갑"에게 전송하는 업무
- ② 입금 및 통지 서비스: "갑"의 고객에게 부여한 "갑"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갑"이 지정한 모계좌에 (이하 "입금 모계좌")에 입금하는 업무 및 입금명세의 전송 업무
- ③ 조회 서비스: "갑"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거래 내역을 "갑"이 조회 가능하게 지원하는 업무 ("갑"은 가상계좌로 입금된 거래 내역을 HSBCnet (HSBC 글로벌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
- ④ RMS (매출 채권 관리시스템) 서비스와 연계된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업무 ("갑"의 거래처별로 할당된 고유 가상계좌는, RMS (매출 채권 관리시스템)에서 고객의 미수금 거래내역과 입금 내역간의 대사작업을 위한 지급인 아이디(Payor ID)로 사용될 수 있다.)

제 3 조 (이용기관의 제한)

- 1.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의 이용기관은 기업 고객에 한한다.
- 2.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이용기관이 전자 금융업자일 경우, "을"이 제공한 가상계좌를 타 업체에 할당하여 관리를 대행하거나 할 수 없다.

제 4 조 (가상계좌의 신청)

- 1. "갑"은 "을"이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갑"의 거래처에게 교부할 고유 가상계좌 수, 입금모계좌인 예금계좌 및 수수료 정산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청한다. 기 신청한 가상계좌수와 지정된 예금계좌들을 추가,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갑"은 "을"에게서 부여 받은 일련의 가상계좌에 고객정보를 첨부하여 "을"에게 처리 의뢰할 수 있고, 해당 파일은 전자메일, 컴퓨터 디스크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 매개물 또는 경로 등과 같

이 전자적장치를 통해 전자문서로써 송부할 수 있다. 그러한 파일은 송부 전에 반드시 암호화 처리를 거쳐야만 하고, “갑”은 “갑”이 작성한 파일의 진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5 조 (업무 처리 및 자금정산방법)

1. 업무처리 시간은 “을”의 대고객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을”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갑”的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갑”的 고객 예금 인출 또는 이체의 청구 절차 없이 “갑”이 본 계약서에 의해 지정한 모계좌로 바로 이체된다. 다만 “을”的 시스템 사정, 경영 정책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동 이체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
3. 자기앞수표로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모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그 자기앞 수표가 추심완료 된 후에 출금 가능하다.
4. “을”이 수납한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별도의 예금청구절차 없이 “갑”的 해당 모계좌에서 출금하여 처리한다.

제 6 조 (입금업무 처리의 예외)

“을”이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처리함에 있어 가상계좌 또는 모계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갑”에게 전문 통보 후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

1. 가상계좌나 모계좌가 거래 중지계좌에 편입되거나 해지된 경우
2. 가상계좌나 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경우

제 7 조 (거래 내용의 확인)

1. “갑”과 “을”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HSBCnet (HSBC 글로벌 인터넷 뱅킹시스템) 계좌 정보 혹은 계좌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HSBCnet 을 통하여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HSBCnet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의 확인사항 중 “을”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결과의 전송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전송내용과 실제 처리 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갑”에게 별도 통지한다.

제 8 조 (수수료)

1. 가상계좌 거래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모계좌로 입금처리된 거래 건수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2.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첫 영업일에 “갑”이 지정한 가상계좌 서비스 신청서상에 명시된 수수료정산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청구절차 없이 자동 인출된다.
3. 상기 수수료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4.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을”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갑”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갑”이 통지를 받은 후 그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수수료 변경에 의하여 “갑”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갑”은 변경 후 최초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 9 조 (효력 및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을”이 “갑”에 대하여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인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갑”과 “을” 중 어느 한쪽이 30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본 계약의 해지 시에도 본질상 유효한 조항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완료될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각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된다.

제 10 조 (계약해지)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1. 상호간에 서면 합의한 경우
 - 1-2. 계약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3. 계약상대방이 파산, 회생절차, 기업개선약정을 신청 또는 체결하거나,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관리인 등이 선임되는 등 신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 1-4. “갑”과 “을”이 각각의 경영 정책상의 사유, 관련 법령의 제/개정, 금융감독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1-5. 가상계좌 발급 후, 1년 간 가상계좌 사용 내역이 없을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 통보후 해지할 수 있다.
- 1-6. 기타 “갑” 또는 “을”이 금융감독 기관이 정한 금융관계 법규 위반 등으로 신용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계약 상대방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1-7. “갑”이 제 2 조 제2항에 명시한 가상계좌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2. 제 1-1 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및 제1-7항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해지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 “갑”은 미지급액을 포함한 총 잔여 수수료를 해지 전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전산운용)

제2조에 따른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전산운용사항은 “갑”과 “을”的 실무담당 부서장이 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 조 (면책)

본 계약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을”的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 따르기로 한다.

제 14 조 (신의성실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준용사항)

1. 본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가상계좌 및 모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을”的 예금업무관련 약관을 준용하며, “을”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타행환 공동망(CD공동망 및 전자금융공동망 포함)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만약, 본 계약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3. “을”이 “갑”에게 발급한 상기의 가상계좌는 “갑”的 소유로서 “갑”的 고객인 지급인의 계좌가 아니라 는 점을 지급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갑”은 반드시 상기 내용을 가상계좌 서비스 실행 전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갑”的 고객인 지급인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4. 갑이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집금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가상계좌 이름 등 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을)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_____ (인)

_____ (인)